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되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행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 1) 조사관이 자료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고지를 필히 하도록 함.

2) 조사 실시 공무원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건의 제출 및 당사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개시 요건을 마련함.

나. 조사를 위해 제출한 물건의 보관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반환·보관규정을 마련함.

다. 시정권고의 내용의 명확화(안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사유와 시정기한만 명시했던 것을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시정권고의 이유,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제목 “(수거물품의 처리 등)”을 “(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방법”이란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의 조사
2. 당사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는 등의 조사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등을 직접 수집하는 조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등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부정경쟁행위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자료가 미비한 경우
3.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제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등(물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사·검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

유자, 점유자 또는 자료등을 제출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된 제품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등의 목록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2. 시정권고의 이유
3. 시정권고의 내용
4. 시정기한

제2조의2(중전의 제2조) 제목“(시정권고의 방법 등)”을“(시정권고의 이행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조”로, “관계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신분증”을 “부정경쟁행위조사관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검
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특허청장 직인

부 칙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u>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② <u>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u></p>	<p>제1조의3(조사의 방법 등) ① <u>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방법”이란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의 조사</u> 2. <u>당사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는 등의 조사</u> 3.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등을 직접 수집하는 조사 <p>② <u>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u></p>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등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부정경쟁행위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자료가 미비한 경우
3.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

<신 설>

지 않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4(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등(물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사·검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자료등을 제출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신 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 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된 제품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등의 목록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2. 시정권고의 이유
3. 시정권고의 내용
4. 시정기한

제2조의2(시정권고의 이행확인)

① <삭 제>

① -----
----- 제2조-----

----- 조사관-----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② 제1항-----

- 조사관-----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 락 처	042-481-5842